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36호 2019. 5. 30.(목)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62호	측량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19-64호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2
남해군 고시 제2019-65호	고현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10
남해군 고시 제2019-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3
남해군 고시 제2019-67호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1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711호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17
남해군 공고 제2019-715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19
남해군 공고 제2019-721호	공시송달 공고	23
남해군 공고 제2019-745호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5
남해군 공고 제2019-746호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4
남해군 공고 제2019-750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9
남해군 공고 제2019-751호	남해군 어업면허 및 어업권 소멸사항 알림 공고	47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62호

측량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지적삼각점) 폐기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2일

남 해 군 수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원 점 명	지역좌표계		표 고	경위도 좌표		표 지 재 질	설치 년월 일	소재지	측량성과 보관장소
			X	Y		위도	경도				
지적 삼각 점	경남 561	중 부	15027 8.05	2817 43.83	30. 08	34-50- 41.258	127-53 -37.887	표 석	2005- 09-14	남해읍 차산리 454-5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남해군 고시 제2019 - 64호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0조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치 :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외 소재지 일원
4.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어울림문화센터 : 2층, 연면적 661.41㎡
 - 회전교차로 조성
 - 지역경관개선
 - 문화특화가로 정비(포장공 1식, 보도블록 정비 1식, 부대공사 1식)
 - 1070스토리가로 조성(프린팅 벽화 1식, 벽화부착조형물 7개소)
 - 진입경관특성화(벽면부 경관개선 1식, 소공원 1개소, 교통섬 상징조형물 1식)
 - 지역역량강화계획
 - 선진지견학 및 주민 교육 : 1식
5. 총 사업비 : 5,920백만원(국비 4,144, 지방비 1,806)
6.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4년간)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화(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이동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어울림문화센터	남해	이동면	무림리	1140		잡	5,784	329	
				소계		1필지	5,784	329	
회전교차로 조성	남해	이동면	무림리	917	1	도	904	904	
				921	24	도	98	98	
				소계		2필지	1,002	1,002	
진입부특성화	남해	이동면	무림리	916	1	대	231	231	
	남해	이동면	석평리	1123		도	8,200	8,200	
				소계		2필지	8,431	8,431	
문화특화가로	남해	이동면	무림리	1799		도	2127	746	
				1249	4	도	66	13	
				1190	2	학	7883	67	
				1249	7	도	55	53	
				1237	6	도	47	17	
				1236	4	도	78	37	
				1235	3	도	41	39	
				1235	1	대	209	20	
				1234	3	도	19	20	
				1234	1	대	83	11	
				1233		대	173	21	
				1232	4	도	72	74	
				1232	5	도	104	35	
				1233	10	도	24	25	
				1233	13	대	84	18	

2019년 5월 30일

막 해 군 공 보

제 636 호 (5)

				1233	8	대	22	16	
				1801	6	도	97	37	
				1224	12	도	92	91	
				1223	5	대	295	15	
				1224	15	도	40	14	
				1223	3	대	380	43	
				1223	8	도	53	55	
				1876		도	1501	415	
				1224	13	도	66	29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문화특화가로	남해	이동면	무림리	1223	7	대	191	17	
				1223	10	도	40	37	
				1135	11	도	18	18	
				1135	5	도	102	24	
				1134	7	대	46	12	
				1133	3	대	680	52	
				1133	6	도	54	55	
				1135	9	대	75	65	
				1135	10	대	146	14	
				1134	6	대	218	24	
				1134	1	도	73	72	
				1876		도	1501	1073	
				1134	5	대	167	14	
				1134	11	도	47	46	
				1131	14	도	23	11	
				1131	1	도	23	24	
				1131	15	도	45	48	
				1131	6	대	198	12	
				1130	12	도	134	115	
				1130	8	대	78	13	
				1130	9	도	10	11	
				1129	4	도	30	29	
				1123	9	도	50	48	
				1123	6	대	17	10	
				1123	11	도	52	53	
				1128	7	도	21	22	
				1123	8	도	111	110	
				1128	18	도	11	10	
				1876	1	도	35	33	
				1802		하	13,303	130	
1038	31	도	23	23					
1875		도	166	171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문화특화가로	남해	이동면	무림리	1038	32	도	38	27	
				1038	35	도	21	21	
				1038	36	도	23	14	
				1038	18	도	12	11	
				1038	28	대	9	12	
				1038	33	도	22	15	
				1807	2	구	34	22	
				1037	22	도	19	18	
				1038	34	도	33	22	
				1874		도	360	46	
				1037	23	도	15	11	
				1874		도	360	303	
				1037	24	도	22	19	
				1037	20	도	42	33	
				1036	21	도	32	24	
				1036	13	대	159	10	
				1036	25	도	21	17	
				1036	22	도	59	55	
				1036	20	도	15	13	
				1036	19	도	15	13	
				1036	24	도	13	12	
				1019	12	대	57	47	
				1873		도	302	302	
				1019	13	도	23	22	
				1019	1	대	141	10	
				1020	1	대	237	20	
				1020	5	도	26	23	
				1019	14	도	139	125	
				1022	2	도	93	85	
				1022	5	도	39	27	
1023	4	도	31	21					
1023	1	도	69	70					

남 해 군 공 보

(8) 제 636 호

2019년 5월 30일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문화특화가로	남해	이동면	무림리	1025		대	236	11	
				1802		하	13,303	54	
				929	1	대	110	13	
				917	1	도	904	706	
				931	3	도	63	69	
				932		대	1,928	98	
				929	5	대	79	15	
				929	4	도	23	23	
				929	8	도	21	19	
				929	7	도	53	54	
				921	1	대	172	10	
				921	16	도	13	13	
				921	17	도	93	80	
				921	21	도	31	31	
				921	8	대	112	12	
				921	23	도	39	30	
				921	15	도	51	20	
				921	18	도	68	51	
				921	24	도	98	60	
				921	24	도	98	40	
				921	15	도	51	30	
				913	6	도	12	11	
				913	2	도	13	14	
				914	4	도	162	95	
				917	2	도	50	50	
				917	1	도	904	185	
				920	5	도	46	29	
				917	12	도	16	12	
				920	1	대	20	17	
				920	4	도	16	13	
919	1	대	19	17					
919	4	도	24	23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비 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문화특화가로	남해	이동면	무림리	919	2	도	122	122	
				917	9	대	298	115	
				918	5	도	15	15	
				918	2	도	172	162	
				917	16	대	211	29	
				917	5	도	76	64	
				918	6	도	40	26	
				944	1	대	36	22	
				944	9	도	10	17	
				944	10	도	88	63	
				917	8	대	60	12	
				944	11	도	49	33	
				1779		도	1517	72	
				소계		134필지	55,911	8,936	
				계		139필지	71,128	18,698	

남해군 고시 제2019 - 65호

고현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0조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고현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고현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치 :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일원
4.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판각체험관 신축 : 2층, 연면적 1,033.40㎡(판각전시관, 판각체험관, 강당, 화장실 등)
 - 고려대장경 문화광장 조성(쉼터 및 휴게시설, 광장 등)
 - 마을간 연결도로 정비(마을간 연결도로 확장)
 - 고려대장경 둘레길 조성(산책로, 주변 조경, 휴게시설 등)
 - 생태주차장 조성(주차장 및 조경 1식)
 - 지역경관개선
 - 고려대장경 판각 체육공원(편의시설, 운동시설, 음수대, 휴게시설 등)
 - 고려대장경 테마가로 정비(대사리 탐동로 일원 가로정비)
 - 지역역량강화계획
 - 선진지견학 및 주민 교육 : 1식
5. 총 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지방비 2,100)
6.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7년간)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고현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고려대장경 판각체육공 원	남해	고현	대사	634		답	1,019	1,019	
				634	1	대	367	367	
				634	3	대	6	6	
				634	5	도	16	16	
				소계		4필지	1,408	1,408	
생태주차장	남해	고현	대사	673		답	820	820	
				673	1	답	586	586	
				소계		2필지	1,406	1,406	
고려대장경 문화광장	남해	고현	대사	762	3	대	179	179	
				765	3	대	129	129	
				765	4	대	43	43	
				765	5	대	92	92	
				765	6	대	82	82	
				765	7	대	50	50	
				765	8	대	63	63	
				765	9	대	69	69	
				765	13	대	7	7	
				768	12	대	16	16	
				768	17	대	33	33	
				768	18	대	27	27	
				소계		12필지	790	790	
마을간 연결도로 정비	남해	고현	대사	766	2	대	213	213	
				900	5	대	56	56	
				900	8	대	109	109	
				소계		3필지	378	378	
				계		21필지	3,982	3,982	

남해군 고시 제2019 - 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화천)
2. 성 명 : (주)케이티 (대표자:황창규)
3.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72 KT무선시설팀
4. 점용목적 : KT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275-3번지
6. 점용면적 : 3㎡
7. 점용기간 : 2019. 5. 28. ~ 2024. 5. 27.

남해군 고시 제2019 - 67호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0조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3. 위치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답하마을
4.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답하마을회관 리모델링(지상 2층 증축, 건축면적 145.9㎡)
 - 생태주차장 조성(조성면적 938㎡)
 - 안전계류장 조성(PE테크 규모 51m x 7m)
 - 마을연결길 정비(마을진입로 정비, 확포장 94㎡)
 - 재난방재, 안전사고 예방시설 조성(지능형CCTV, 대피로 안내판 등)
 - 지역소득증대
 - 답하체험센터 건립(지상 1층, 연면적 141.8㎡)
 - 어린이해양체험공간 조성(PE테크 면적 193㎡)
 - 지역경관개선
 - 해안산책로 조성(가로등 벌레퇴치기, 벤치설치, LED 가로등 교체)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부대비용 등
5. 총 사업비 : 1,864백만원 (국비 1,232백만원, 지방비 529백만원, 자부담 103백만원)
6.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5년간)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어촌어항공단)
8. 기본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답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편입토지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지목		면적(m ²)	
			공부	현황	전체	편입
1	미조면 미조리	213	양어장	양어장	938	938
2	미조면 미조리	213-1	답	답	138	138
3	미조면 미조리	213-2	양어장	양어장	397	397
4	미조면 미조리	213-4	양어장	양어장	378	378
5	미조면 미조리	197-5	전	전	451	2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 - 711호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공사 미착수로 인하여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하고 건축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18) 제 636 호

2019년 5월 30일

1. 제 목 : 건축허가 취소 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3. 처분대상

연번	허가번호	대지위치	건축주	용도	비고 (반송사유)
1	2012-신축허가 -제14호 (2012.03.08.)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836	주식회사광림 자동차정비**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2019. 5. 16. ~ 2019. 6. 7.(22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남해군청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 (☎055-860-3096)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715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 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 다. 사업량 : 도로개설 L=71m, B=8m
- 라.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보상계획

- 가. 보상시기 : 2019년 6월 ~ (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예정)
-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이체)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알림→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
→협의→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3. 감정평가 선정 및 시행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나. 선정방법 : 3인을 선정하되,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 선정
- 다. 추천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 편입토지 및 물건 내역 : 붙임 참조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지적측량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기타사항

-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끝.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리	지번 (당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아산리	419-7	대	18	18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19-14 (419-6)	대	3	3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98		국(국토교통부)	-			
4	남해읍 서면리	323-1	전	86	79		남해군	-			
5	남해읍 아산리	406-4	전	81	60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06-2	도	33	30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05-1	대	13	7		남해군	-			
8	남해읍 서면리	311-1	전	3	3		남해군	-			
9	남해읍 서면리	311-2	도	43	42		남해군	-			
10	남해읍 서면리	311-10 (311-6)	대	8	8		남해군	-			
11	남해읍 서면리	324-1	전	7	7	아산리 338	김0금	-			
12	남해읍 서면리	324-2	도	99	28	아산리 338	김0금	-			
13	남해읍 서면리	323-2	도	69	44		남해군	-			
14	남해읍 서면리	311-11 (311-6)	대	3	3		남해군	-			

남 해 군 공 보

(22) 제 636 호

2019년 5월 30일

○지장물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물 건 종 류	규 격	편입 면적 (㎡)	단 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 리	지번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서변리	311-3	주택	블록 석	120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492길 12, *동***호	이0봉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감삼동)	대구신 용보증 재단	가압류	
									대구 동구 동북로500, ***동 ***호(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이0숙	가압류	
			물탱크	FRP	1	EA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 사	가압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492길 12, *동 ***호	이0율	근저당	
			철재 대문	철재	1	식			대구 수성구 수성로75길 16, ***동 ****호	정0수	근저당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42, 4층(역삼동, 퍼스트역삼빌딩)	메가주 식회사	근저당	

남해군 공고 제2019 - 721호

공시송달 공고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사업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1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1) 사업 명칭 :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사업 목적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4) 사업 시행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5번지 일원
 - 나. 사업내용 : 사면정비 L=262m

2. 의견 제출 기간 및 장소

- 1) 의견 제출기간 : 2019. 5. 21. ~ 6. 4. (14일간)
- 2) 의견 제출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 (☎ 055-860-3293,4)

3.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현황				비고
					소유자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2인				
1	남해읍 아산리	205-2	도	89	북변동484	김희0			
2	남해읍 아산리	211-2	도	307	북변동569	김선0			

남해군 공고 제2019 - 745호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뿐만이 아닌 모든 군민이 다함께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등 총칙(안 제1조 ~ 제5조)

- 목적, 기본이념,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

나. 고령친화도시 조성(안 제6조 ~ 제19조)

- 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조사 및 연구 등
- 생활환경 개선,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사회활동 참여 장려 등
- 국제교류의 활성화, 교육, 추진실적 평가, 포상 등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안 제20조 ~ 제23조)

- 구 성 : 20명 이내로 도시계획,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로 위촉
- 기 능 :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발굴·제시

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안 제25조 ~ 제33조)

- 구 성 : 위원장(부군수) 포함 15명 이내, 군수가 위촉
- 임 기 :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 기 능 :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심의·자문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832, 팩스 860-3882, e-mail : cho7105@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남해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

② 남해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
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
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
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군 분청, 소속기관
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
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군수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제20조(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

제21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4조(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2.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746호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기본내용(안 제1조 ~ 제3조)

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내용 (안 제4조 ~ 제8조)

- 처우개선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안 제9조 ~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832, 팩스 860-3882, e-mail : cho7105@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9 - 750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남해군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전망대와 스카이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망대 시설은 삼동면 물건리에 위치한 건축물 및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등의 시설이며, 스카이워크 시설은 미조면 송정리에 위치한 건축물 및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 (안 제2조)
- 위치는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는 삼동면 물건리 산271-3번지이고 남해군 해안조망 스카이워크는 미조면 송정리 산352-17번지 일원임(안 제3조)
- 수탁자의 의무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안 제5조)
-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가액 산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6조)
- 위탁의 취소는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고, 수탁조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안 제8조)
-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휴장일은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9조)
- 전망대 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어른 : 5,000원, 청소년·군인 : 4,000원, 어린이 : 3,000원이며, 스카이워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이용료 납부하여야 하며, 어른 : 2,000원, 청소년·군인 : 1,000원, 어린이 : 500원(안 제10조)
- 이용료 면제는 국민·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며, 이용료 100분의 50 감면은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등(안 제11조)

- 익스트림 스포츠시설과 스카이워크 이용 제한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술에 만취한 사람,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의 경우 : 만10세 이하,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860-3739, e-mail : n0820711@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860-3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와 스카이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망대 시설”이란 삼동면 물건리에 위치한 카페테리아, 판매장, 옥상전망대 등 건축물 및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주차장, 데크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스카이워크 시설”이란 미조면 송정리에 위치한 카페테리아, 판매장, 화장실 등 건축물 및 스카이워크,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및 스카이워크 등의 시설물 이용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및 스카이워크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 해안조망 전망대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71-3번지 일원
2. 남해군 해안조망 스카이워크 :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352-17번지 일원

제4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망대 및 스카이워크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전망대 및 스카이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③ 수탁자는 전망대 시설 및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변경으로 수탁자가 설치·사용하던 모든 시설물 등은 위탁 운영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6조(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가액 산정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조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수탁자가 전망대 및 스카이워크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경우
-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운영 및 휴장)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전망대 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과 스카이워크 시설 중 스카이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스카이워크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1. 면제

- 가. 국민·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다.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경감

- 가.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 나.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라.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마.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책임 등 군수가 환불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망대 시설과 스카이워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2.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 3. 술에 만취한 사람
- 4. 만10세 이하 : 전망대 시설 중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의 경우
-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변상책임)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제10조 관련)

1.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단위 :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5,000	4,000	3,000
단 체	3,000	2,500	2,000

- 가.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생
- 다.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지무원 포함)
- 라. 어 른 : 19세 이상
- 마.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2. 스카이워크 시설

(단위 :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2,000	1,000	500
단 체	1,500	700	300

- 가.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생
- 다.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지무원 포함)
- 라. 어 른 : 19세 이상
- 마.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남해군 공고 제2019 - 751호

남해군 어업면허 및 어업권 소멸사항 알림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16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19.05.31 2029.05.30 (10년)	남해군 선소리	남해읍 선소어촌계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09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남해 선소	50000	2009.05.31 2019.05.30 (10년)	남해군 선소리	남해읍 선소어촌계	재개발

※ '18/1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